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4. 11. 8 선고 2024가단5338691 판결 [구상금 등 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경기신용보증재단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텍

담당변호사 이근수

피고1. A

2. B

변론 종결2024. 10. 18.

판결 선고2024. 11. 8.

주 문

1. 피고 A은 원고에게 48,660,383원 및 그 중 38,975,816원에 대하여 2024. 1. 29.부터, 9,377,197원에 대하여 2024. 6. 5.부터 각 2024. 10. 8.까지 연 8%,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,
 - 가. 피고 A과 피고 B 사이의 2003. 10. 4.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.
 - 나. 피고 B는 피고 A에게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23. 10. 6. 접수 제12757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(소장 부분 송달일 : 피고 A 2024. 10. 8.).

2. 적용법조

피고 A: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피고 B: 자백간주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, 제150조 제3항)

판사조형우

별지